

# 학생증 출입시스템 구축 과업지시서

2021. 11.

동국대학교 총무처 총무팀

## I 과업개요

### 1. 개요

- 가. 사업명 : 동국대학교 학생증 출입시스템 연계 구축
- 나. 과업목적 : 既사용중인 학생증 시스템을 출입시스템(방법설비)과 연계하여 학생증을 통한 학내 출입통제 기능을 구현
- 다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

### 2. 사업범위

- 가. 보안 서비스 인프라 연동
- 다. 사용자 인증
- 라. 학사DB 연동을 통한 사용자 정보 연동
- 마. 방법설비 출입관리 시스템 연계
- 바. 학생증 사용을 위한 테스트 진행

## II 일반사항

본 과업지시서에서 편의상 발주자(동국대학교)를 “갑” 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“을” 이라 칭한다.

### 1. 목적

- 본 과업지시서는 “학생증 출입시스템 구축 ”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,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“갑” 의 지시에 따라 “을” 이 과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2. 계약자 준수사항

- 가. “을” 은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·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, 의문사항은 반드시 "갑"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“갑” 의 해석과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“을” 은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목적에 필요한 사항은 반영시켜야 한다.

- 다. 본 과업지시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, 누락된 사항에 의하여 시스템 운영상에 문제가 예상될 경우 “을”은 즉시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라. “을”은 “갑”과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,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을”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,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처리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.
- 바. “을”은 면허, 특허권, 등록된 의장권, 공업소유권 및 지적 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“갑”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“을”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.
- 사. “을”은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### 3. 납품 및 설치

- 가.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, 설치하여야 하고 “을”이 납품하는 물품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단종된 제품이어서는 안 되며 제품의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,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“을”이 부담한다.
- 나. “을”은 “갑”의 기존 학생증발급서비스 환경을 사전에 긴밀히 파악하여 제품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다. “갑”은 설치제품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되는 성능, 사양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“을”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.
- 라. 제품의 설치는 “갑”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며, 작업에 필요한 각종 장비, 소모품 등은 “을”이 제공하여야 한다.
- 마. 제품 설치 후 네트워크가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 제품과 연계되는 웹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바. “을”은 “갑”이 도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성능이 미달하여,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“갑”의 요구에 의해 “을”은 납품·설치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- 사. “을”이 납품하는 제품은 “갑”에서 운영 중인 학사행정DB 등과 연동되어야 한다.

### 4. 기술/교육 지원

- 가. “을”은 “갑”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도입 시스템 활용 기법, 경미한 장애조치 등 해당 솔루션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.

- 나. “을”은 시스템과 관련하여 교육의 내용, 일정, 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“갑”과 사전에 협의한 후,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다. 기술이전 및 교육에 따른 모든 비용은 “을”이 부담하고 “갑”이 추가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수용하여야 한다.

### 5. 유지보수

- 가. “을”은 소프트웨어의 일괄 정비보수 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기간 동안(검수일로부터 1년 간)에 무상 유지 보수 및 정비에 책임을 지고 직접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- 나. “을”은 24시간 정상운영 지원, 장애 응급대처 및 복구를 할 수 있는 운영인력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“을”은 시스템 장애 발생 시, 장애 신고 후 2시간 이내에 복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고 장애 신고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장애를 복구하여 정상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.
- 라. “을”은 장애로 인하여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“갑”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마. “을”은 월 1회 이상 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6. 보안대책

- 가. 본 사업에 투입되는 참여 인력은 “갑”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나.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인증절차 구현 등 동국대학교 전산실 내의 서버에 관한 작업 등은 방문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.
- 다. “을”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각서를 대표자 책임 하에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참여 직원의 신원확인에 응하여야 한다.
  - 1) 보안각서 1부
- 라.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, 교체 시에는 ‘갑’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
- 마. “을”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중 취득한 “갑”의 보안 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, 네트워크,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, 제공받은 자료는 관련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- 바. 참여 인력은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에는 “을”이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
사. 사업완료 후 반드시 관련 자료 반환 및 소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.

- 대학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의 유출이 확인될 경우, 부정당업자 지정 및 관련법에 의거한 제재조치를 수용해야 함

아. 사업자 및 투입인력은 대학의 보안관련 규정 및 상위 기관 보안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대학이 정한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인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자. 계약업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1항 18호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.

-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: 3월
-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: 1월

<누출금지 정보의 범위>

- ① 대학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·외부 IP주소 현황
  -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
  -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
  -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
  -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
  - ⑥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
  - ⑦ 방화벽·IPS 등 정보보호제품의 설정정보 및 보안정책 정보
  - ⑧ 라우터·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
  - ⑨ 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’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
  - ⑩ ‘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’ 제2조2호의 개인정보(2011.9.30 이후 ‘개인정보 보호법’ 제2조1호의 개인정보)
  - ⑪ ‘보안업무규정’의 대외비
  - ⑫ 정보시스템 운용 현황
  - ⑬ 기타 대학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
- ※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

차. 대학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를 포함하여 중요정책자료 등 대학 내부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 및 관련자는 대학 보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, 대학은 보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 및 관련자에게 사법기관 신고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카. **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SW개발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개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보안악점항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보안전문업체를 통한 검증시 이에 관련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그 문**

**를 해결해야 하며, 그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한다.**

다. 또한 행정안전부의 SW개발보안가이드의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보안문제 발생시 해당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.

7. 검사 및 검수

가. “을”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스템을 설치 및 납품·완료하여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나. “을”은 납품 및 설치 후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함을 입증하여야 하며,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할 수 있다.

다. 검수는 검수 담당자 입회하여 실시하고 현장 시험에서 발견되는 예러나 문제점에 대하여 “을”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,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지체 없이 시정·조치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.

라. 최종 검수 결과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“갑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의 요구에 의해 “을”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설치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, 기존 시스템은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마. 검수 완료 후에도 본 제품 구입에 있어 “을”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“을”이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

바. 대금지급조건은 잔금 100%(납품완료후 지급) 지급조건으로 한다.

8. 납품제품 교체조건

가. 제품 설치 후 주 2회 이상 혹은 월 3회 이상 동일한 종류의 장애 발생시 “갑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갑”의 요구에 의해 “을”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설치제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, 기존 시스템은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9. 기타사항

가. “갑”은 “을”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의 요구조건을 바꿀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나. 변경은 “갑”이 작성하고 “을”이 확인서명한 공식적인 수정계약서로 기록되어져야 한다.

다. 본 규격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자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하여야 하며,

“갑”과 “을”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“갑”의 계약 담당자의 해석에 따른다.



## 보안확약서

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,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.

1. 본 업체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겠으며,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.
2.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(소속 직원)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, 하도급업체(소속 직원)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.
3.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서약업체(단체) 대표

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

(서명)

동국대학교총장 귀하